

의안번호	제 106 호
의결연월일	1999. 9. 17

##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 9. 6 예산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9. 10

다. 상정일자 : 1999. 9. 16

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안동안건심사특별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사회복지과장 : 이상원)

#### 가. 폐지이유

- 1962. 5. 25일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인근 홍성군에 현대시설의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읍의 도시팽창과 함께 도시계획 지역내 위치로 주변에 주택이 조성되고 있어 계속 사용시 군민 보건 및 도시 미관상 부적합하여 지난 '99. 6. 10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함.

###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이원용)

- 본 폐지 조례안은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상 이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화장장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4. 결의·답변요지

- 생 락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